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61

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김태선 • 윤준병 • 이학영

김주영 • 한민수 • 김남근

김태년 • 윤종군 • 안호영

김영환 · 맹성규 · 이용우

박균택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최대 15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열람·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지는바,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정보공개소 송이 각하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 니다.

또한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

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.

주요내용

- 가.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법원의 판결 및 정보공개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(안 제11조제5항).
- 나.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(안 제11조제6항).
- 다.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 1항).

법률 제 호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사실이 확정된 대통령기록물은 정보공개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
 -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중 예산 집행에 관한 기록물은 「감사원법」 제22조 제1항에 따른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통령은"을 "대통령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)	제5조(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	②
리전문위원회(이하 "전문위원	
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	
사항을 심의한다.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3.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
	<u>록물의 보호기간</u>
<u>3.</u> ~ <u>8.</u> (생 략)	<u>4.</u> ~ <u>9.</u> (현행 제3호부터 제8
	호까지와 같음)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이관) ① ~ ④ (생 략)	제11조(이관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공공
	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
	률」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
	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
	기록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
	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 이
	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
	공개의 의무가 있는 사실이 확
	정된 대통령기록물은 정보공개

<신 설>

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)
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(이하 "대통령지정기록물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열람·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(이하"보호기간"이라 한다)을 따로정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 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중 예산 집행에 관한 기록물은 「감사 원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 계검사를 받은 이후 이관하여 야 한다. 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) ① 대통령은 전문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-----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